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정 2012.4.27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시행 2012.4.29.)
일부개정 2012.9.28 환경부고시 제2012-1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64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8호 (시행 2012.9.28.)
일부개정 2014.10.30 환경부고시 제2014-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1호 (시행 2014.12.1.)
일부개정 2016.7.15 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 (시행 2016.8.14.)
일부개정 2018.1.3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6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9호 (시행 2018.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 측정기관
 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9.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3.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④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각 1부.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별표 2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3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83조 및 제485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2018. 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감리인 자격)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신설규정 및 제9조(교육)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인 겸업금지에 대한 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또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을 함께 수주(계약을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인 교육을 수료한 자 중 2012년부터 2013년에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감리원 등급	자 격 기 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별표 2] 감리원 이수과목(제9조 관련)

1. 일반감리원 교육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석면개론	- 석면의 특성 및 종류 - 석면의 건강 유해성 -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4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관련 법령(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등) 및 제도 운영 전반	2	-	
감리인 관련 법령 실무	- 감리인 법령, 규정 및 역할 - 감리인의 현장 조치사항	2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실습	1	1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 석면해체작업현장조성 및 관리방법 실습	8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비산정도 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비산정도 측정 결과 평가 및 해석	2	-	
석면조사/분석 방법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석면지도의 이해	3	-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2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2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감리완료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 이해	2	-	
시험	-	1	-	
합 계		29	6	
		35		

※ 교육내용 및 강의 시간은 교육기관에서 환경부의 검토를 받아 조정 가능

2. 고급감리원 교육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석면개론	- 석면의 특성 및 종류 - 석면의 건강 유해성 -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4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관련 법령(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등) 및 제도 운영 전반	2	-	
감리인 관련 법령 실무	- 감리인 법령, 규정 및 역할 - 감리인의 현장 조치사항 사례연구	2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1	1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 민감사업장 석면해체작업 및 위해도 소통방법 사례연구 - 석면해체작업현장 적절성평가 실습	8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비산정도 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비산정도 측정 결과 평가 및 해석	2	-	
석면조사/분석 방법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 석면조사보고서의 이해 및 사례연구	3	-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2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2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감리완료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 사례연구	2	-	
시험	-	1	-	
합 계		29	6	
		35		

※ 교육내용 및 강의 시간은 교육기관에서 환경부의 검토를 받아 조정 가능

3. 보수교육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현장 실무	- 감리인신고, 감리보고서 제출 등 감리인 관련 규정 전반 - 감리 부실 사례 예시	2	-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2	-	
공기 중 석면농도 및 비산 정도 측정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비산정도 측정 결과 평가 및 해석	2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감리완료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 실습	1	-	
합 계		7	0	
		7		

[별표 3]

감리원의 표식(제10조제1항 관련)



- 1) 크기 : 위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되, 신체조건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 2) 모양 : 위의 모양을 기본으로 하되,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도 가능하다.
- 3) 재질 : 쉽게 찢어지거나, 빗물에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 4) 글자 : 글자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5) 색상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며, 양쪽 끝의 막대는 빨간색으로 한다.
- 6) 착용 : 양 끝을 부착하거나, 끈으로 묶어 팔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 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각 1부.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 (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마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서명 또는 인)
석면조사기관	(서명 또는 인)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서명 또는 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서명 또는 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발 주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감 리 인	회 사 명				법인(사업)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석면해체제거업체	회 사 명				대 표 자	공사업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m ²)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m ³)				
	기간	석면해체·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확인자		성 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 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 사 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간 : 20 . . . ~ 20 . . . (시간)

위 사람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m²)